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I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주요사항 안내

가. 상담관련분야 인정 시 주요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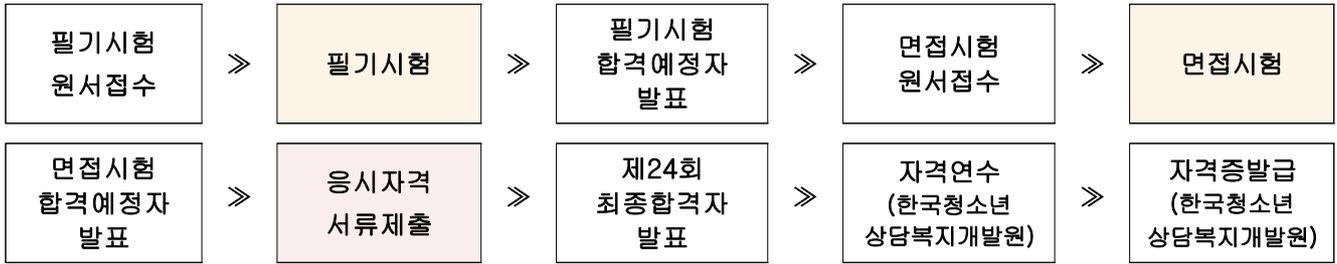
-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분야**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와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 또는 전공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
 -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는 학과명이 아닌 전공명으로 판단(일반대학원 교육학과는 학과명으로 인정 가능)**
 - **조합된 학과명에 10개 학과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에는 인정 불가**
 - 10개 학과명 조합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심리+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 자는 생략되어도 인정
 - 응시자격 판단 기준일은 서류제출 마감일(2026. 3. 13.)을 기준으로 판단
- 상담관련분야 인정은 ‘**학위**’ 명이 아닌 ‘**학과**’ 또는 ‘**전공**’ 명으로 판단

구분	인정기준	
대학의 경우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로 명시	
대학원의 경우	교육학 분야 관련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로 명시
		일반대학원 - 학과명이 교육(학)일 경우 인정 가능 (전공명 무관) 교육대학원 -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로 인정 가능할 경우 인정 (학과명으로 인정 불가)

나. 동일(유사)교과목 인정 시 주요사항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동일(유사)교과목” 을 통해 기 인정된 동일(유사)교과목 확인 가능
 - 핵심키워드가 모두 일치해야하며 과목명에 “~(개)론”, “~학”, “~연구”, “~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생략)된 경우나 “의”, “및”, “과”, “I·II”, “1·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추가 또는 생략) 경우에는 동일(유사)과목으로 인정가능(이외의 생략 또는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유사) 교과목 추가 심사 신청 방법은 “학과장 직인” 날인된 동일(유사) 교과목 이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전자공문 제출(상반기 - 7. 31. 까지 / 하반기 - 12. 31. 까지)

II 2025년도 제24회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절차



※ 최종합격 후 자격연수를 받아야 자격증 취득

III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요건 및 제출 서류

1 응시자격 기준 및 제출 서류(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3항 및 별표3)

등급	응시자격 유형	제출서류
1급	<p>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박사 학위 수료는 취득이 아니므로 인정 불가</p>	<p>1-1. 학과명 또는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된 경우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는 전공에 명시) 예) 서울대학원 상담심리학과 or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박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p> <p>1-2. 학과명,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 4과목을 전공으로 이수) 예) 동국대학원 목회상담학과 or 연세대학원 미술치료학과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해당 학과의 박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과목 구분에 전공이라는 단어 포함 필수)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은 분야별 1개씩 인정 가능 (규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p> <p>1-3. 학과명,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과목 4과목을 해당 전공으로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과에는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해당 학과의 박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재학 중 커리큘럼 확인서(학과장 직인 필수) 1부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은 분야별 1개씩 인정 가능 (규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p>

<p>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p>	<p>2-1. 학과명 또는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된 경우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는 전공에 명시) 예) 서울대학원 상담심리학과 or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석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p> <p>2-2. 학과명,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 4과목을 전공으로 이수) 예) 동국대학원 목회상담학과 or 연세대학원 미술치료학과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해당 학과의 석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과목 구분에 전공이라는 단어 포함 필수)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은 분야별 1개씩 인정 가능 (규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p> <p>2-3. 학과명,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과목 4과목을 해당 전공으로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과에는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해당 학과의 박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재학 중 커리큘럼 확인서(학과장 직인 필수) 1부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은 분야별 1개씩 인정 가능 (규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p>
<p>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p>○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p>
<p>2급</p>	<p>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1급 1번 유형에서 박사 → 석사로 변경하여 적용</p> <p>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1급 2번 유형에서 석사 → 학사 / 상담실무경력 4년 → 3년으로 변경하여 적용</p> <p>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사본 1부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p>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3급	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 1급 1번 유형에서 박사 → 학사로 변경하여 적용
	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1급 2번 유형에서 석사 → 전문학사 / 상담실무경력 4년 → 2년으로 변경하여 적용
	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학사 학위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불필요)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
	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	○ 3급 3번 유형에서 학사 → 전문학사 / 상담실무경력 2년 → 4년으로 변경하여 적용
	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3급 3번 유형에서 학사 → 고졸 / 상담실무경력 2년 → 5년으로 변경하여 적용

가. 상담관련분야

- 상담관련 학과(전공) 인정 시 법령에 나열되어 있는 10개 ‘**상담관련 분야**’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와 이에 포함된 10개 학과(전공)명의 조합일 경우 인정하고 조합된 학과(전공)명에 10개 학과(전공)명 이외의 추가적인 문구 있을 때에는 인정 불가

※ 인정 예시 : **청소년+상담학, 아동+상담학, 교육+심리학** 등

※ 상담관련분야 학과명 중에 ‘학’자는 빠져있더라도 인정됨

- 상담관련분야 인정 시 ‘학위’ 명이 아닌 ‘**학과**’ 또는 ‘**전공**’ 명으로 판단

구분	인정기준	
대학의 경우	학부명, 학과명, 전공명 중 어느 한 곳에 상담관련분야로 명시	
대학원의 경우	교육학 분야 관련	일반대학원 - 학과명이 교육(학)일 경우 인정 가능 (전공명 무관)
		교육대학원 -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 또는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관련분야로 인정 가능할 경우 인정 (학과명으로 인정 불가)

※ (예시)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국어교육전공의 경우

→ **학과명만으로 인정이 불가**하며,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인정이 불가하므로,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에 따라 해당 전공에서 상담관련 교과목을 분야별 1개씩 4개 과목 이상 이수 또는 전공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

○ **국외에서 취득한 학위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원본서류는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심사 기간 내에 공단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나.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청소년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	제출서류
①상담의 이론과 실제(상담원리·상담기법), ②면접원리, ③발달이론, ④집단상담, ⑤심리측정 및 평가, ⑥이상심리, ⑦성격심리, ⑧사회복지 실천(기술)론, ⑨상담교육, ⑩진로상담, ⑪가족상담, ⑫학업상담, ⑬비행상담, ⑭성상담, ⑮청소년상담 또는 이와 내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목 중 4과목 이상을 전공 교과과목으로 채택하고 있는 학문분야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동일유사교과목 '25년 2월 기준) 참조>	성적증명서(전공명시) 또는 교학처장(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재학 중 전공학과커리큘럼

- **석·박사 학위 수료의 경우, 학위 취득이 아니므로 응시자격 충족 불가**
- **복수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 학과를 졸업한 경우 인정(학위 취득자에 한함)**
- **연계전공·부전공·융합전공으로 상담관련분야를 선택했을 경우 상담관련과목을 해당전공으로 4과목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인정**
 - ※ 개설만 되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및 주전공 과목과 합산 불가
 -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 예) 상담심리학 부전공인 경우, 상담심리학과에서 상담관련분야 4개과목 이상을 해당 전공으로 이수해야 인정(개설 인정 불가)

<동일(유사)교과목 인정 확인시 참고사항>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동일(유사)교과목”을 통해 기 인정된 동일(유사)교과목 확인 가능
 - 핵심키워드가 모두 일치해야하며 과목명에 “~(개)론, ~학, ~연구, ~과정, ~세미나, ~이론 등이 포함(생략)된 경우나 “의, 및, 과, I·II, 1·2” 등과 같이 조사나 숫자가 다른(추가 또는 생략) 경우에는 동일(유사)

과목으로 인정가능(이외의 생략 또는 추가적인 문구가 있을 경우 동일(유사)교과목 심사 필요)

- 동일(유사) 교과목 추가 심사 신청 방법은 “학과장 직인” 날인된 동일(유사) 교과목 이수확인서를 첨부하여 대학(원)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전자공문** 제출(이외의 방법 불가)
 - 동일(유사) 교과목 심사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하되, 심사는 **연 2회('25. 7월말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8월 심사, '25. 12월말까지 접수된 건에 대하여 '26. 1월 심사) 실시** 후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 예정
 - 2025년도 제24회 시험의 경우 **2026년 1월까지 심사가 완료된 과목에 한하여 응시자격 서류심사 시 동일(유사)교과목으로 인정 가능**

2 상담 실무경력

가. 응시등급별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별표2)

응시등급	상담유형	연간(1년기준) 실시경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 리 검 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 리 검 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수험자가 1년(12개월, 365일)을 설정하며, 설정한 1년 안에 상담유형별 기준 횟수를 **모두 충족**할 경우 1년 상담실무경력 인정
 - 서류심사 마감일 내로 1년 설정 후 특정 기간 내에 연간 기준 모두 충족 시 실무경력 1년 인정 가능

※ 예) 2급 수험자가 '24년 4월 1일 ~ '25년 3월 31일까지 1년 설정(서류심사 마감일 : '26. 3. 13.) 후 '24년 10월까지 모든 유형별 기준을 충족하였을 경우, 1년 인정 가능 단, '24년 11월부터 2번째 년도 설정 불가('25년 4월부터 12개월 설정 가능)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 1년 설정 시 서류심사 마감일을 초과하여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연간 기준 모두 충족 시 실무경력 1년 인정 가능

※ 예) '25년 4월 1일 ~ '26년 3월 31일(서류심사 마감일 : '26. 3. 13.)까지 1년 설정 후 서류심사 마감일 전까지 기준 모두 충족 시 1년 인정 가능

- 내담자(상담대상자)는 모든 사람(청소년, 성인, 아동, 학부모 등)이 가능
- 상담 유형별 인정 기준

구분	급수	인정기준
개인상담	1.2.3급	대면 개인상담 경력(전화 및 인터넷 상담 인정 불가)
집단상담	1.2급	비구조화, 구조화 상담을 지도자(리더,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리더, 코리더 포함하여 5명이상 참여)_참가 인정 불가
	3급	비구조화 및 구조화, 집단상담 관련 워크숍 등을 실시(리더,코리더) 또는 참가한 경력(리더 코리더 포함하여 5명이상 참여)
심리검사	1.2.3급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

※ 심리검사 인정 가능 리스트는 별도로 공지하지 않음(동일한 검사임에도 실시기관마다 검사명이 다를 수 있음)

- 상담 유형별 세부 기준

구분	급수	세부 기준
개인상담	1.2.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개인상담만 인정(화상 대면상담 인정 가능 기간('20.2 ~ '22. 4) 제외) ■ 상세기록은 내담자 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 ※ 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자 2명을 대상으로 각각 25회씩(총 50회) 진행했을 경우, 2장 작성 ■ 개인상담기록과 개인상담 상세기록의 사례번호는 일치해야 하며, 개인상담기록에 제시된 사례 수와 상세기록지 수가 일치해야 함 ※ 예) '개인상담기록' 표에 총 10사례 제시하였다면, '개인상담 상세기록은 총 10쪽 작성'(각 사례번호는 일치) ■ 상세기록지는 페이지별로 상담을 실시한 장소의 기관장 직인을 받아야 함 ■ 수험자가 설정한 1년 안에 실시한 기관이 다수인 경우 합산 가능(기관별 직인 필수) ■ 기관장 직인이 없을 경우, 상위기관의 직인으로 대체 가능 ※ 예) 경기도상담센터장 직인이 없을 경우, 경기도지사 직인 인정 가능
집단상담	1,2,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수는 5명(리더, 코리더 포함) 이상으로 구성 ■ 상세기록은 내담집단 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 ※ 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집단 3개를 대상으로 각각 8시간씩(총 24시간) 진행했을 경우, 3장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험자가 설정한 1년 안에 실시한 기관이 다수인 경우 합산 가능 (기관별 직인 필수) 기관장 직인이 없을 경우, 상위기관의 직인으로 대체 가능 ※ 예) 경기도상담센터장 직인이 없을 경우, 경기도지사 직인 인정 가능 진행방식, 내용에 대한 제한 없음
	1.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구조화 및 구조화 상담을 지도자(리더 or 코리더)로서 실시만 인정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구조화 및 구조화 상담을 지도자(리더 or 코리더)로서 실시 또는 구성원으로 참가 인정
심리검사	1.2.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국 표준화 검사 또는 투사검사만 인정 상세기록은 사례(검사방법)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 ※ 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자 1명을 대상으로 10개 검사방법을 진행했다면, 각 검사방법 별로 한페이지 작성 (총 10사례 인정 가능) 여러 검사를 묶어서 진행하여 한 사례로 인정도 가능 ※ 예) 검사방법 4개를 활용한 심리검사에 대하여, 상세기록지 1장에 작성할 경우, 1사례로 인정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8줄 이상 작성 심리검사의 결과에 대한 표, 그래프 등은 첨부 필수 아님

<온라인 대면(화상) 실무경력 한시적 인정 기준>

-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코로나 방역지침을 최초 발표한 해당월('20.2월) 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해당월('22.4월)까지 적용
- 연간(1년기준) 실무경력(개인 및 집단상담) 인정기준의 70%까지만 인정

상담유형	1급 및 2급	3급
개 인 상 담	35회까지 인정	14회까지 인정
집 단 상 담	17시간까지 인정	4시간까지 인정
심 리 검 사	인정불가	인정불가

- 화상으로 실시한 대면상담 실무경력만 인정(**전화, 인터넷 상담 인정불가**)

나.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다음 제시된 기관에서(정규직, 임시직, 파트타임 등으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임(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 청소년회복지원시설(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예시내용 참조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 법무부(보호관찰소, 구치소, 교도소 등),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등),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등), Wee프로젝트(스쿨, 클래스, 센터 등), 경찰청(SPO(학교전담경찰관)) 등

○ 민간기관 :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 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또는 컨설턴트의 지위와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있는 일반 기관의 경우 해당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은 공단이 요청할 경우 제출**

※ 상담기관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 상담 실무경력 증빙 제출서류(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로서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및 연수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상담 실무경력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 상담내용 등이 명시되고 상담기관장의 직인(개인도장 불가)이 날인된 상담 실무경력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를 각 자격시험 **시행지역 공단지부·지사(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민간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또는 고유번호증을 **공단이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3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및 심사

가. 응시자격 서류심사 일정 및 대상자

- 심사대상 : 2025년도 제24회 청소년상담사 제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
- 심사기간 : 2026. 3. 2.(월) 09:00 ~ 3. 13.(수) 18:00 [7일간, 토·일 제외]
 - 제1차(필기) 시험 합격예정자가 면접시험에 불합격 하였더라도 **응시자격 증빙서류가 제출·승인되어야 제1차 필기시험이 최종 합격 처리됨**
 -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결과 부적격자일 경우에는 제1차 필기시험 및 제2차 면접시험 모두 불합격(무효) 처리됨
-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에서 서류심사 결과 확인 가능

나. 응시자격 서류제출·심사기관 : **【한국산업인력공단】**

기 관 명	담당부서	주 소		전 화 번 호
서울지역본부	전문자격시험부	02512	서울 동대문구 장안벚꽃로 279	02-2137-0566
부산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6519	부산 북구 금곡대로 441번길 26	051-330-1801
대구지역본부	필기시험부	42704	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로 213	053-580-2381
인천지사	필기시험부	21634	인천 남동구 남동서로 209	031-249-8697
광주지역본부	필기시험부	61008	광주 북구 첨단벤처로 82	062-970-1769
대전지역본부	필기시험부	35000	대전 중구 서문로 25번길 1	042-580-9134
제주지사	자격시험부	63220	제주 제주시 복지로 19	064-729-0713

- ※ 위의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관에서만 심사 실시하며, 이외의 기관에서는 심사하지 않음(제출 착오로 인해 서류심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
- ※ 공단 본부(울산)는 응시자격 서류제출·심사기관이 아님을 유의
- ※ 응시자격 서류는 위 기관 중 본인이 제1차(필기) 시험에 응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행기관에 제출 권고

다. 제출방법 : 방문제출, 등기우편, 온라인학력증명 중 택1

- 방문제출 : 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관으로 직접 방문하여 제출
- 등기우편 : 서류심사 마감일('26. 3. 13.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 봉투에 '청소년상담사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증'이라고 반드시 표기

- 온라인 : 졸업증명서, 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등 학력사항만 가능(일부학교에 한함)
 - ※ 온라인 학력서류 제출 가능 대학(원)은 큐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자주묻는 질문&답변 게시글 참조
 - ※ 온라인 제출 시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 필요 없음

라. 제출서류

구 분	제 출 서 류
필 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서식) 1부(한국산업인력공단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자료실') -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청소년상담사 자격증 1부(원본제시, 사본제출) -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명서 1부
*해당자만 제 출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그 밖의 상담관련분야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통 (성적증명서 또는 원본대조필, 교학처장(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 중 전공학과 커리큘럼) - 상담실무경력 인정증빙서류(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증빙서류 양식 작성,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 등은 공단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필수 제출 아님)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 미비서류가 있을 경우 불합격 처리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제출 원칙(원본으로 제출해야 할 서류 중 사본으로 제출한 경우는 미제출한 것으로 간주). 단, 동사무소 발급본 혹은 '인터넷 출력' 본(정부 24 등)은 원본으로 인정
- 모든 서류에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청소년기본법 시행령에서 명시하는 청소년학, 청소년지도학, 교육학, 심리학, 사회사업학, 사회복지학, 정신의학, 아동학, 아동복지학, 상담학 분야 이외의 학과(전공)로서 유사관련학과(전공)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의 과목을 분야별 1개씩 4과목 이상 교과목으로 채택(개설)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성적증명서 또는 커리큘럼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상담관련과목(4과목 이상) 교과목 채택에 대한 증명서류

- ① 4과목을 수강한 경우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 ② 4과목을 수강하지 않고 학과에 개설이 된 경우 : 졸업증명서, 학과장 직인이 날인된 본인 재학 중 전공학과 커리큘럼 확인서

※ **커리큘럼 각 장 마다 원본대조필, 학과장 직인 필수(개인도장불가)**

⇒ 상담관련분야 연계전공자·부전공자·융합전공자는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과목을 4과목 이상 해당 전공교과목(**연계전공·부전공·융합전공**)으로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성적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 개설만 되어 있을 경우 인정 불가 및 주전공 과목과 합산 불가

※ 일반선택과목, 교양과목, 교직과목, 계절학기과목을 이수한 경우 인정되지 않음

※ 예) 상담심리학 부전공인 경우, 상담심리학과에서 분야별 1과목씩 상담관련분야 4개 과목 이상을 해당전공으로 이수해야 인정(개설 인정 불가)

- 상담실무경력 서류는 공단 양식만 제출하면 되며, 이외 경력(재직)증명서, 4대보험 증명서 등은 제출 불필요
- 상담 실무경력 인정 증빙서류에는 각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 필수(개인도장 불가)
- 민간상담기관의 경력을 제출 할 경우 해당기관의 사업자등록증명원, 비영리단체 고유번호증 등은 공단에서 요청할 경우 제출(필수 제출 아님)
- 외국학위자의 경우, 관련서류【학위증명서, 성적증명서, 아포스티유(협약국가 해당) 등】을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아포스티유 대체 가능)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하여 서류접수 기간 내에 제출해야 함
- 외국 학위자의 성적증명서 상 번역된 과목명과 동일유사교과목 리스트에 나와있는 과목명이 불일치 할 경우 인정 불가하며, 번역된 성적증명서 상에 과목 구분이 전공으로 명시(전공필수, 전공선택, 전공기초 등) 되어 있어야 함

<서류 제출 후 유의사항>

- 서류접수 및 승인 상태 확인 필수
 - ※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마이페이지 ▷ 응시자격 ▷ 응시자격 제출서류 확인에서 서류심사 결과 확인가능(<http://www.Q-Net.or.kr/site/sangdamsa>)
- 미비 서류를 반드시 본인이 확인해야 하며, 서류 미비로 인한 책임은 온전히 수험자 귀책임

4 응시자격 요건별 제출서류

등급	응시자격 유형	제출서류
1급	<p>1. 대학원에서 청소년(지도)학·교육학·심리학·사회사업(복지)학·정신의학·아동(복지)학·상담학 분야 또는 그 밖에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상담 관련 분야(이하 "상담관련분야"라 한다)의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p>※ 박사 학위 수료는 취득이 아니므로 인정 불가</p>	<p>1-1. 학과명 또는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된 경우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는 전공에 명시) 예) 서울대학원 상담심리학과 or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박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p> <hr/> <p>1-2. 학과명,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 4과목을 전공으로 이수) 예) 동국대학원 목회상담학과 or 연세대학원 미술치료학과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해당 학과의 박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과목 구분에 전공이라는 단어 포함 필수)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은 분야별 1개씩 인정 가능 (규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p>
		<p>1-3. 학과명,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과목 4과목을 해당 전공으로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과에는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해당 학과의 박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재학 중 커리큘럼 확인서(학과장 직인 필수) 1부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은 분야별 1개씩 인정 가능 (규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p>
	<p>2.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p>	<p>2-1. 학과명 또는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된 경우 (교육대학원 교육학과는 전공에 명시) 예) 서울대학원 상담심리학과 or 고려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육심리전공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석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p>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p>2-2. 학과명,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 4과목을 전공으로 이수) 예) 동국대학원 목회상담학과 or 연세대학원 미술치료학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해당 학과의 석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과목 구분에 전공이라는 단어 포함 필수)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은 분야별 1개씩 인정 가능 (규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 <p>2-3. 학과명, 전공명이 상담관련분야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분야 과목 4과목을 해당 전공으로 이수하지 않았으나, 해당학과에는 전공으로 개설되어 있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해당 학과의 박사 학위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 재학 중 커리큘럼 확인서(학과장 직인 필수) 1부 ※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상담관련 과목은 분야별 1개씩 인정 가능 (규넷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참조)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
	<p>3. 2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청소년상담사 2급 자격증 사본 1부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
<p>2급</p>	<p>1. 대학원에서 상담관련분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1번 유형에서 박사 → 석사로 변경하여 적용
	<p>2.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2번 유형에서 석사 → 학사 / 상담실무경력 4년 → 3년으로 변경하여 적용
	<p>3. 3급 청소년상담사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서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청소년상담사 3급 자격증 사본 1부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
<p>3급</p>	<p>1. 대학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의 상담관련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1번 유형에서 박사 → 학사로 변경하여 적용
	<p>2.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급 2번 유형에서 석사 → 전문학사 / 상담실무경력 4년 → 2년으로 변경하여 적용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p>3. 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학사 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응시자격서류심사신청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상담관련 분야가 아닌 학사 학위증명서 1부 (성적증명서 불필요) ○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공단양식) 1부
<p>4. 전문대학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기관에서 전문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상담 실무경력이 4년 이상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3번 유형에서 학사 → 전문학사 / 상담실무경력 2년 → 4년으로 변경하여 적용
<p>5.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상담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급 3번 유형에서 학사 → 고졸 / 상담실무경력 2년 → 5년으로 변경하여 적용

부 록

상담 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 지침

1. 상담 실무경력의 인정 기준

1) 상담 실무경력 인정 기관

- 상담 실무경력은 특정 상담기관에서 일정기간 근무한 경력이 아니라 **‘실제로 상담을 실시한 경력’**으로서 <표 1>에 제시된 상담관련기관에서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를 실시한 경력(단,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 수험자 본인이 상담기관을 운영하고 있을 경우, 서류에 직인이 포함되어 있다면 인정 가능

<표 1>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관

- 청소년단체(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8호)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 청소년복지시설 : 청소년쉼터, 청소년자립지원관, 청소년치료재활센터(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1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 각급 “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 / 각종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기관
(정부기관 · 공공상담기관 · 법인체상담기관 및 민간상담기관) : **아래 예시내용 참조**

○ 정부기관·공공상담기관·법인체상담기관

- 법무부(보호관찰소, 구치소, 교도소 등), 고용노동부(진로상담센터 등), 보건복지부(아동학대예방센터 등), 국방부(군상담 부대 및 기관), 여성가족부(성폭력상담센터 등), Wee프로젝트(스쿨, 클래스, 센터 등), 경찰청(SPO(학교전담경찰관)) 등

- 민간기관 : 상담기관으로서 관할관청에 신고 또는 등록을 필한 후 상담 활동(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 상담교육 등)의 실적을 제시할 수 있는 상담기관 또는 컨설턴트의 지위와 업무 범위가 규정되어있는 일반 기관의 경우 해당

※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등은 공단이 요청할 경우 제출

※ 상담기관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음

2) 상담 실무경력의 세부 인정기준

- 상담 실무경력은 응시자격관련 **자격증 취득**, 학위 취득 및 졸업 이후의 실무경력을 말한다.
 - 예) 2015년도 2월 학사학위 취득자의 경우, 학위 취득 이후부터 상담 실무경력 인정
 - 예) 2015년도 5월 3급 자격증 취득자의 경우, 자격증 취득 이후부터 상담 실무경력 인정
- 수험자가 1년(12개월, 365일)을 설정하며, 설정한 1년 안에 상담유형별 기준 횟수를 **모두 충족**할 경우 1년 상담실무경력 인정한다.
 - 1년 설정 시 서류심사 마감일을 초과하여 설정하였다 할지라도, 서류심사 마감일까지 연간 기준 충족 시 실무경력 1년 인정 가능하다.
 - ※ 예) '25년 4월 1일 ~ '26년 3월 31일(서류심사 마감일 : '26. 3. 13.)까지 1년 설정 후 서류심사 마감일 전까지 기준 모두 충족 시 인정
- 내담자(상담대상자)는 모든 사람(청소년, 성인, 아동, 학부모 등)이 가능
- 응시등급별로 1년간 상담실무 충족기준이 다르므로 반드시 1년간 기준을 확인하여 작성한다.(<표 2> 참조)

<표 2> 응시등급별 청소년상담사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응시등급	상담유형	연간(1년기준) 총 실시경력
1급 및 2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5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24시간 이상 실시
	심 리 검 사	10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3급 청소년상담사	개 인 상 담	대면상담 20회 이상 실시
	집 단 상 담	6시간 이상 실시 및 참가
	심 리 검 사	3사례 이상 실시 및 해석

- 온라인 대면(화상) 상담의 경우, '20.2월 ~ ' 22.4월까지 실시한 실무경력만 인정이 가능하며 인정기준의 **70%까지만 인정된다.**(전화 및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상담은 인정하지 않는다)

<온라인 대면(화상) 상담 실무경력 인정기준(1년간 기준)>

상담유형	1급 및 2급	3급
개 인 상 담	35회까지 인정	14회까지 인정
집 단 상 담	17시간까지 인정	4시간까지 인정
심 리 검 사	인정불가	인정불가

○ 상담 유형별 세부 기준

구분	급수	세부 기준
개인상담	1.2.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면 개인상담만 인정(화상 대면상담 인정 가능 기간('20.2 ~ '22.4) 제외) ■ 상세기록은 내담자 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 ※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자 2명을 대상으로 각각 25회씩(총 50회) 진행했을 경우, 2장 작성 ■ 개인상담기록과 개인상담 상세기록의 사례번호는 일치해야 하며, 개인상담기록에 제시된 사례 수와 상세기록지 수가 일치해야 함 ※예) '개인상담기록' 표에 총 10사례 제시하였다면, '개인상담 상세기록은 총 10쪽 작성'(각 사례번호는 일치) ■ 상세기록지는 페이지별로 상담을 실시한 장소의 기관장 직인을 받아야 함 ■ 수험자가 설정한 1년 안에 실시한 기관이 다수인 경우 합산 가능(기관별 직인 필수) ■ 기관장 직인이 없을 경우, 상위기관의 직인으로 대체 가능 ※예) 경기도상담센터장 직인이 없을 경우, 경기도지사 직인 인정 가능
집단상담	1,2,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원 수는 5명(리더, 코리더 포함) 이상으로 구성 ■ 상세기록은 내담집단 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 ※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집단 3개를 대상으로 각각 8시간씩(총 24시간) 진행했을 경우, 3장 작성 ■ 수험자가 설정한 1년 안에 실시한 기관이 다수인 경우 합산 가능(기관별 직인 필수) ■ 기관장 직인이 없을 경우, 상위기관의 직인으로 대체 가능 ※예) 경기도상담센터장 직인이 없을 경우, 경기도지사 직인 인정 가능 ■ 진행방식, 내용에 대한 제한 없음
	1.2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구조화 및 구조화 상담을 지도자(리더 or 코리더)로서 실시만 인정
	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구조화 및 구조화 상담을 지도자(리더 or 코리더)로서 실시 또는 구성원으로 참가 인정
심리검사	1.2.3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표준화 검사 또는 투사검사만 인정 ■ 상세기록은 사례(검사방법)별로 한 페이지씩 작성 ※예) 2급 응시자가 설정한 1년 안에 내담자 1명을 대상으로 10개 검사방법을 진행했다면, 각 검사방법 별로 한페이지 작성(총 10사례 인정 가능) ■ 여러 검사를 묶어서 진행하여 한 사례로 인정도 가능 ※예) 검사방법 4개를 활용한 심리검사에 대하여, 상세기록지 1장에 작성할 경우, 1사례로 인정 ■ 피평가자에 대한 평가는 8줄 이상 작성 ■ 심리검사의 결과에 대한 표, 그래프 등은 첨부 필수 아님

○ 상담 실무경력은 개인상담, 집단상담, 심리검사에 대해 연도마다 1년간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수험자가 갖춰야 하는 총 연수의 기준이 충족되어야 인정한다.

예) 상담관련학과 석사학위 취득한 이후 1급 청소년상담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경우
→ 수험자는 12개월씩 4번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한 12개월 안에 개인상담 50회 이상,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하고, 총 4년의 상담 실무경력(전체 개인상담 200회 이상, 집단상담 96시간 이상, 심리검사 40사례 이상)을 서류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2. 상담 실무경력 증빙서류의 작성 시 유의사항

○ 상담 실무경력 증빙서류 작성양식 출력 :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청소년상담사 홈페이지 (<http://www.Q-Net.or.kr/site/sangdamsa>)의 ‘자료실’
→ ‘서식자료’ → 응시등급에 해당되는 서식 확인 후 작성

○ 응시등급별로 상담 실무를 충족해야 하는 기간이 다르므로, 응시자의 응시등급 별 상담 실무 충족기간을 반드시 확인한 후 상담 실무경력 증빙서류를 작성한다.(<표 3> 참조)

예) 3급 응시자 중 상담관련분야 전문학사 취득자는 졸업 후 2년의 상담 실무경력을 증빙해야 하고, 타 분야 전문학사취득자는 졸업 후 4년의 상담 실무경력을 증빙해야 함

○ 상담의 유형·일시·장소·상담대상·주요 상담내용 등을 작성양식에 따라 빠짐없이 기록한다.

○ 작성을 완료한 상담 실무경력 증빙서류를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의 직인을 날인 받아 필기시험을 응시한 지역을 관할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지부·지사(응시자격 서류심사 기관 참조)에 제출한다.

※ 사업자등록증명원, 고유번호증 등은 공단이 요청할 경우 제출(필수 제출 아님)

※ 수정테이프 사용 금지

○ 상담기관장 직인은 실시한 장소의 기관장 직인이며, 상세기록지 상 상담기관 및 장소의 기관과 일치 하여야 함(수험자가 소속된 기관장 직인이 아님)

예) 개인상담을 A 학교에서 진행을 했다면, 상세기록지의 기관장 직인은 A 학교장 직인이어야 함
(상담을 해당 기관에서 진행한 실적이 맞음을 인정하는 의미)

○ 직인이 없거나, 직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상위기관에 직인으로 대체할 수 있다.

예) 서울에 위치한 A 학교에서 실시했던 상담 실적에 대하여 직인을 못받을 경우, 서울시 교육청 직인으로 대체 가능(공문서 상의 직인으로도 대체 가능)

- 국외에서 실시한 상담 실무경력의 경우, 해당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를 작성하여 상담실무기관의 기관장 날인을 받아 제출한다.
 - 외국어로 발급(작성)된 서류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 확인(공증) 후 한국어로 번역·공증을 받아 서류 원본과 상담 실무경력 서류 번역본 함께 제출한다. → 서류 심사 시 인정여부 결정을 위해 기관실사 및 자격검정위원회에 회부를 할 수 있다.
- ※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 국가는 아포스티유 증명서로 대체 가능

<표 3> 각 급별 상담실무경력 기준 세부내역

응시 등급	자 격 요 건	상 담 유 형	1년간 필요경력	실무경력 총족연수	실시경력 총계	비고
1급	상담관련분야 석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4년	200회	1년간 실시경력의 최소기준이 년도 마다 충족필요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4년	96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4년	40사례	
	2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경력 인정)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3년	15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3년	72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3년	30사례	
2급	상담관련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3년	15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3년	72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3년	30사례	
	3급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 후 경력 인정)	개인상담	50회 이상 실시	2년	100회	
		집단상담	24시간 이상 실시	2년	48시간	
		심리검사	10사례 이상 실시	2년	20사례	
3급	상담관련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2년	4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2년	12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2년	6사례	
	타분야 학사학위 취득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2년	4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2년	12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2년	6사례	
	타분야 전문대학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4년	8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4년	24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4년	12사례	
	고등학교 졸업자	개인상담	20회 이상 실시	5년	100회	
		집단상담	6시간 이상 참가	5년	30시간	
		심리검사	3사례 이상 실시	5년	15사례	

※ (유의사항) “실시경력 총계”는 제시된 실적이상 인정 가능하나, “온라인(화상) 실시경력”은 제시된 실적이상 인정 불가함

※ 온라인(화상) 실시경력 인정기간은 '20.2월 ~ 22.4월까지 1년기준 70%까지만 인정가능(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3. 상담실무증빙서류 작성 세부지침

1) 총괄표

- 각 연간 기준은 ‘20**년 *월 ~ 20**년 *월’ 형식으로 작성한다.
- 총괄표에 작성된 전체 실시경력의 횟수 및 시간, 사례수와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검사 세부기록에 따른 실시경력이 일치되는지 확인한다.
- 온라인(화상) 상담횟수는 ‘20.2월 ~ 22.4월까지 1년기준 인정기준의 70%까지 인정 가능하며, 해당하는 경우 “비고(온라인 상담실적)”에 작성한다.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작성하지 않음)
 - “실시경력 총계”에 온라인 상담횟수 포함

<별지 제1호 서식>

상담실무경력 증빙서류(예시)

응시등급	성명	생년월일
(1)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750815

1. 총괄표 - 1 ~ 3급 모두 작성

연도별	상담유형	실시경력 총계	비고(온라인(화상) 상담실적)
1년기준 2018년 8월 ~ 2019년 7월	개인상담	총 64회	2018년~2019년은 온라인 상담 인정 기간이 아님
	집단상담	총 26시간	
	심리검사	총 10사례	
1년기준 2020년 5월 ~ 2021년 4월	개인상담	총 59회	예) 온라인 0회
	집단상담	총 36시간	예) 온라인 10시간
	심리검사	총 10사례	해당없음
1년기준 2021년 5월 ~ 2022년 4월	개인상담	총 78회	예) 온라인 15회
	집단상담	총 32시간	예) 온라인 5시간
	심리검사	총 10사례	해당없음
년 월 ~ 년 월	개인상담	2급 취득(2018. 5. 8.) 이후 경력 3년 개인상담 : 150회 이상(50회 * 3년) 집단상담 : 72시간 이상(24시간 * 3년) 심리검사 : 30사례 이상(10사례 * 3년)	
	집단상담		
	심리검사		

※ 온라인 실적의 경우, 총 횟수에 포함

예) 2020년 5월 ~ 2021년 4월의 경우, 집단상담 36시간 중 온라인 10시간이라는 의미

2) 개인상담기록 및 개인상담상세기록

- 전화상담이나 채팅상담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대면 개인상담 경력만을 인정한다.
- ‘개인상담 횟수’란 개인상담 사례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회기수를 말한다.** 따라서 **내담자별로 당해 년에 시행된 상담횟수에 따라 한 페이지씩 작성하면 된다.**
 - 예) 1급 응시자의 경우 2025년 1월~12월 기간 동안 개인상담을 A내담자를 대상으로 10회기, B내담자를 대상으로 20회기, C내담자를 대상으로 20회기를 실시했다면 개인상담 상세기록은 **내담자 A, B, C 사례별로 1장씩 총 3장을 기록**하면 된다.
- 개인상담기록지에 제시된 전체 상담기간, 상담횟수, 상담기관 및 장소와 개인상담상세기록에 따른 실시경력이 일치되는지를 확인한다.
- 개인상담기록에 제시된 **사례 수만큼 개인상담상세기록을 모두 작성**한다.
 - 예) ‘개인상담기록’ 표에 총 10사례를 제시하였다면, ‘개인상담상세기록’ 은 총 10 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 개인상담 상세기록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 온라인(화상) 상담횟수는 ‘20.2월 ~ 22.4월까지 1년기준 인정기준의 70%까지 인정 가능하며,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 2-1. 개인상담기록 작성 시 “비고(온라인 상담실적)” 에 온라인 상담회수를 작성하고, “상담횟수” 에는 온라인 상담실적을 포함한 총 횟수를 작성
 - 2-2. 개인상담 상세기록 작성 시 “예시2-2-2”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관련 서식은 청소년상담사 큐넷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온라인(화상) 상담실적이 없는 경우 기존 양식 활용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응시등급	성명	생년월일
(1)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750815

2-1. 개인상담기록 (온라인 개인상담 실적 없는 경우) 1~3급 모두 작성

사례번호	상담기간	상담횟수	상담기관 및 장소	비고(온라인 상담실적)
1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	31회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1번째 년도 총 64회 (1~2)
2	2018년 10월 10일부터 2019년 7월 31일까지	33회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3	2020년 5월 8일부터 2021년 4월 30일까지	30회	학생생활상담소	2번째 년도 총 59회 (3~5)
4	2020년 5월 12일부터 2021년 3월 18일까지	18회	학생생활상담소	
5	2021년 1월 11일부터 2021년 4월 29일까지	11회	학생생활상담소	
6	2021년 5월 3일부터 2022년 4월 6일까지	38회	학생생활상담소	온라인 10회
7	2021년 8월 2일부터 2022년 4월 30일까지	40회	학생생활상담소	
	년 월 일부터 년 월 ■ 1년 기준 년, 월			3번째 년도 총 78회 (6~7)
	년 월 2018. 8 ~ 2019. 7			
	년 월 2020. 5 ~ 2021. 4			
	년 월 2021. 5 ~ 2022. 4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2급 취득(2018. 5. 8.) 이후 경력 3년 개인상담 : 총 150회 이상(50회 * 3년) 첫 번째: 64회 / 두 번째: 59회 / 세 번째: 78회(총 201회)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 월 일부터	회		
	년 월 일까지	회		
	년 월 일부터	회		
	년 월 일까지	회		
총 상담횟수		총 201회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응시등급	성명	생년월일
(1)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750815

2-2. 개인상담 상세기록_1~3급 모두 작성

(예시2-2-1) 온라인(화상) 상담실적 없는 경우

사례번호	1 (2-1. 개인상담기록지 사례번호 1번 내담자)		상담기관 및 장소		학생생활상담소	
내담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18세	학 력	고재
상담기간	2018년 8월 1일부터 2019년 7월 30일까지 (개인상담기록지와 동일)		총 상담횟수		총 31 회	
주호소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가 호소한 문제 및 호소 문제의 배경 작성 예) 자꾸 집을 나가고 싶은데.....					
상담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와 협의한 상담목표 및 전략 작성 예) 1. 내담자와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상담동기를 높이는.....					
상담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상담 진행과정을 간략히 기술 예) 가출에 대한 욕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목표 달성정도 및 내담자의 남아있는 주제, 추수지도계획 등 기술 예)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가출횟수가.....					

** '2-1개인상담기록'에 맞추어 '2-2개인상담상세기록'을 사례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인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예시2-2-2) 온라인(화상) 상담실적이 있는 경우

사례번호	7 (2-1. 개인상담기록지 사례번호 7번 내담자)		상담기관 및 장소		학생생활상담소	
내담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19세	학 력	고재
상담구분	상담기간					상담횟수
총 상담기간 및 횟수	2021년 8월 2일 ~ 2022년 4월 30일까지 (개인상담기록지와 동일)					40회
오프라인 상담	2021년 8월 2일 ~ 2022년 4월 30일까지					30회
온라인(화상) 상담	2021년 8월 2일 ~ 2021년 12월 10일까지					10회
주호소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가 호소한 문제 및 호소 문제의 배경 작성 예) 자꾸 집을 나가고 싶은데.....					
상담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담자와 협의한 상담목표 및 전략 작성 예) 1. 내담자와 신뢰로운 관계형성을 통해 상담동기를 높이는.....					
상담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전체 상담 진행과정을 간략히 기술 예) 가출에 대한 욕구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평 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목표 달성정도 및 내담자의 남아있는 주제, 추수지도계획 등 기술 예) 상담이 진행됨에 따라, 가출횟수가.....					

**** '2-1개인상담기록'에 맞추어 '2-2개인상담상세기록'을 사례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인

3) 집단상담실시(참가)기록 및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

○ 집단상담 관련 인정 기준(리더, 코리더 포함 집단원 5명 이상)

예) 수험자가 리더로서 상담을 진행하였고, 참여 인원이 4명일 경우 구성원 총 5명으로 인원 수 기준 충족

- 1, 2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집단상담을 지도자(리더, 코리더)로서 실시한 경력을 인정한다.(실시기록과 실시상세기록만 작성)
- 3급 : 비구조화집단상담, 구조화 집단상담을 실시(리더,코리더)하거나 집단원으로서 참가, 집단상담 심리교육강좌 및 집단상담 workshop에 수강생으로 참가한 경력을 인정한다.(실시 또는 참가기록과 실시 또는 참가 상세기록 혼합하여 작성 가능)

○ 집단상담의 유형

- 비구조화집단상담 : 집단 내 촉진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집단역동을 통해 구성원의 성장과 발달을 돕는 집단

예) T-집단, 참만남집단상담 등

- 구조화집단상담 : 집단원들이 특수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어떤 특정한 주제를 이해하거나 혹은 인생의 힘든 전환기를 헤쳐 나가도록 돕기 위한 집단 프로그램

예) 자기주장행동개발집단, 또래상담프로그램, 가치관명료화집단상담, 자기조절집단 프로그램 등

○ ‘집단상담 실시(참가)기록’ 에 제시된 집단 수만큼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 을 모두 작성한다.

예) 집단상담 실시(참가)기록지에 총 5개의 집단을 제시하였다면,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은 총 5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 ‘집단별 실시(참가) 상세기록’ 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 온라인(화상) 상담횟수는 ‘20.2월 ~ 22.4월까지 1년기준 인정기준의 70%까지 인정 가능하며, 해당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작성한다

- 3-1. 집단상담기록 작성 시 “비고(온라인 상담실적)” 에 온라인 상담횟수를 작성하고, “상담횟수” 에는 온라인 상담실적을 포함한 총 횟수를 작성
- 3-2. 개인상담 상세기록 작성 시 “예시3-2-2” 서식을 참고하여 작성(관련 서식은 청소년상담사 큐넷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가능)

※ 온라인(화상) 상담실적이 없는 경우 기존 양식 활용 가능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응시등급	성명	생년월일
(1)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750815

3-1. 집단상담 실시기록_ 1, 2급(실시만 인정) 작성(예시)

번호	집단명	상담기간	상담 시간	실시/ 참가	상담기관 및 장소	비고(온라인 상담실적)	
1	가치관 명료화 집단훈련	2018년 8월 3일부터 2018년 12월 31일까지	10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1번째 년도 총 26시간 (1~2)	
2	청소년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2018년 9월 2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	16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3	의사소통 향상 집단상담	2020년 5월 2일부터 2021년 4월 27일까지	18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2번째 년도 총 36시간 (3~4)	
4	의사소통 향상 집단상담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12일까지	18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5	자아존중감 향상 집단상담	2021년 5월 2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16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6	자기효능감 향상 집단상담	2022년 3월 2일부터 2022년 4월 27일까지	16시간	실시	학생생활연구소	온라인 4시간	
	■ 1년 기준 년, 월 2018. 8 ~ 2019. 7 2020. 5 ~ 2021. 4 2021. 5 ~ 2022. 4	년 월 일부터				3번째 년도 총 32시간 (5~6)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시간				
		년 월 일부터	2급 취득(2018. 5. 8.) 이후 경력 3년 집단상담 : 총 72시간 이상(24시간 * 3년)				
		년 월 일부터	첫 번째: 26시간 / 두 번째: 36시간 / 세 번째: 32시간 (총 94시간) _1급이므로 실시만 인정(참가 인정 불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총 집단상담 시간			총 94시간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가 다르므로 위 총괄표 예시와 일치하지 않음**

응시등급	성명	생년월일
(3)급 청소년상담사	박심리	700209

3-1. 집단상담 실시 및 참가기록_3급(실시 또는 참가 인정)만 작성 가능 (예시)

번호	집단명	상담기간	상담 시간	실시/ 참가	상담기관 및 장소	비고(온라인 상담횟수)
1	부모교육 Workshop	2019년 1월 3일부터 2019년 1월 31일까지	5시간	참가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1번째 년도 총 15시간 (1~2)
2	청소년 진로 집단상담 프로그램	2019년 12월 19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10시간	실시	한국청소년상담 복지개발원	
3	의사소통 향상 집단상담	2020년 3월 2일부터 2020년 4월 27일까지	4시간	참가	학생생활연구소	
4	의사소통 향상 집단상담	2021년 1월 20일부터 2021년 2월 12일까지	4시간	참가	학생생활연구소	온라인 2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2번째 년도 총 8시간 (3~4)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 1년 기준 년, 월 2019. 1 ~ 2019. 12 2020. 3 ~ 2021. 2	심리학 전문학사 학위 취득(2009. 7. 1.) 이후 경력 2년(3급 응시자격) 개인상담 : 40회 이상(20회 * 2년) 집단상담 : 12시간 이상(6시간 * 2년) 심리검사 : 6사례 이상(3사례 * 2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시간			
총 집단상담 시간			총 23시간			

※ 3급의 경우 집단상담 **참가** 경력도 인정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응시등급	성명	생년월일
(1)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750815

3-2. 집단별 실시 상세기록_1, 2급 해당(예시)

(예시 3-2-1) 온라인(화상) 상담실적 없는 경우

번호	1	집 단 명	가치관명료화 집단훈련	
참가인원	10 명	실시기관 및 장소	학생생활연구소	
집단참가대상	청소년 5명, 성인 5명			
집단상담기간	2018년 8월 3일 ~ 2018년 12월 31일		집단상담시간	10 시간
집단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훈련 목표 작성 예) 가치관 명료화의 개념을 이해.....			
집단의 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의 과정 및 내용 작성 예) '선택 행동'의 불가분성을 이해하기위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상담목표 달성정도, 추수상담 계획 등 기술 예) 집단원들로 하여금 선택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 '3-1 집단상담 실시기록'에 맞추어 '3-2 집단별 실시 상세기록'을 집단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인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예시3-2-2) 온라인(화상) 상담실적이 있는 경우

번호	6	집단명	자기효능감 향상 집단상담
참가인원	8명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집단참가대상	아동 4명, 성인 4명		
상담구분	집단상담기간		집단상담시간
총 상담기간 및 시간	2022년 3월 2일 ~ 2022년 4월 27일까지 (집단상담 실시 기록지와 동일)		16시간
오프라인 상담	2022년 4월 2일 ~ 2022년 4월 25일까지		12시간
온라인(화상) 상담	2021년 3월 2일 ~ 2022년 3월 10일까지		4시간
집단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훈련 목표 작성 예) 가치관 명료화의 개념을 이해.....		
집단의 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의 과정 및 내용 작성 예) '선택 행동'의 불가분성을 이해하기위해.....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단상담목표 달성정도, 추수상담 계획 등 기술 예) 집단원들로 하여금 선택의 의미를 인식할 수 있도록.....		

** '3-1 집단상담 실시기록'에 맞추어 '3-2 집단별 실시 상세기록'을 집단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인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별지 제1호 서식> **급수가 다르므로 위 총괄표 예시와 일치하지 않음**

응시등급	성명	생년월일
(3)급 청소년상담사	박심리	700209

3-3. 집단별 참가 상세기록_3급만 해당 (예시)

(예시 3-3-1) 온라인(화상) 상담실적 없는 경우

번호	1	집 단 명	부모교육 Workshop	
지도자 성명	교육강사 혹은 상담전문가	지도자 소속 및 직위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조교수	
참가 인원	50 명	실시기관 및 장소	학생생활연구소	
집단상담기간	2011년 1월 3일 ~ 2011년 1월 31일		집단상담시간	5 시간
집단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workshop의 학습 목표 작성 예) 부모의 자기성장 및 자질 향상을 통해.....			
집단의 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orkshop 과정 및 내용 작성 예) 다시보는 나와 우리가족 : 가계도를 작성한 후.....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내용에 대한 느낀 점 등 약술 예) 자녀와의 관계 및 가치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 '3-1 집단상담 참가기록'에 맞추어 '3-2 집단별 참가 상세기록'을 집단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인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예시3-3-2) 온라인(화상) 상담실적이 있는 경우

번호	4	집 단 명	의사소통 향상 집단상담
지도자 성명	교육강사 혹은 상담전문가	지도자 소속 및 직위	학생생활연구소 상담조교수
참가 인원	20 명	실시기관 및 장소	학생생활연구소
상담구분	집단상담기간		집단상담시간
총 상담기간 및 시간	2021년 1월 20일 ~ 2021년 2월 12일까지 (집단상담기록지와 동일)		4시간
오프라인 상담	2021년 1월 30일 ~ 2021년 2월 12일까지		2시간
온라인(화상) 상담	2021년 2월 1일 ~ 2021년 2월 5일까지		2시간
집단의 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의사소통 향상 집단상담의 학습 목표 작성 예) 의사소통 향상을 위해서는...		
집단의 과정 및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집단상담 과정 및 내용 작성 예) 가족 간 의사소통 향상을 위한 노력 : 눈을 맞추고.....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상담 내용에 대한 느낀 점 등 약술 예) 가족간의 관계 및 가치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 '3-1 집단상담 실시기록'에 맞추어 '3-2 집단별 실시 상세기록'을 집단별로 한페이지씩 작성**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인

4) 심리검사 실시기록 및 심리검사 상세기록

○ 심리검사 관련 인정 기준

- 1, 2, 3급 : 전국 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을 인정

○ 심리검사의 유형

- 전국 표준화검사 : 표준화된 절차를 통해 행동의 표집을 수집하고 그것을 기초로 하여 비교하는 체계적 절차를 통해 제작된 심리검사

예) MMPI, MBTI, TCI, 지능검사, 적성검사 등

- 투사검사 : 비구성적인 자극 즉 애매한 자극에 대한 개인반응을 분석하는 심리검사

예) Rorschach Test, TAT, BGT, HTP, DAP, SCT 등

※ 출처와 용도가 분명치 않은 인터넷검사 및 설문조사용으로 실시한 검사, 간단한 체크리스트 형식의 검사는 제외

○ 실시한 검사방법이 **전문기관(한국가이던스 등)에서 활용되고 있는 방법일 경우 표준화된 검사**임(이외에 없는 검사명에 대해서는 유선 문의 요망)

○ 심리검사 실시기록에 제시된 사례 수만큼 심리검사 상세기록을 모두 작성한다.

예) '심리검사 실시기록'지에 총 40개의 사례를 제시하였다면, '심리검사 상세기록'은 총 40페이지를 작성해야 한다.

○ 피검자에 대한 평가는 8줄 이상으로 요약 기재한다.

○ 심리검사 상세기록의 경우, 작성한 페이지마다 상담실시기관의 기관장 직인을 받는다.

○ 심리검사 결과의 내용의 많을 경우 별지 첨부 후 상담기관장 직인을 날인 해야 한다.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응시등급	성명	생년월일
(1)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750815

4-1. 심리검사 실시기록 _ 1~3급 모두 해당 (예시)

사례번호	검사일시	검사종류	실시기관 및 장소
1	2018년 8월 10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	2018년 8월 14일	적성탐색검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3	2018년 8월 17일	로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4	2018년 8월 20일	MMP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5	2018년 8월 24일	HTP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6	2019년 3월 5일	SCT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7	2019년 3월 25일	K-WISC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8	2019년 4월 7일	학습방법진단검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9	2019년 5월 9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10	2019년 6월 10일	MBTI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	년 월 일	생략	
30	2022년 4월 29일	학습방법진단검사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p>■ 1년 기준 년, 월 2급 취득(2018. 5. 8.) 이후 경력 3년</p> <p>2018. 8 ~ 2019. 7 심리검사 : 총 30사례 이상(10사례 * 3년)</p> <p>2020. 5 ~ 2021. 4 첫 번째: 10사례 / 두 번째: 10사례 / 세 번째: 10사례</p> <p>2021. 5 ~ 2022. 4 (총 30사례)</p>			
총 검사사례		총 30 사례	

※ 전국표준화검사와 투사검사만 인정

2025년도 청소년상담사 자격검정 요강

응시등급	성명	생년월일
(1)급 청소년상담사	한상담	750815

4-2. 심리검사 상세기록 (예시)

사 례 번 호	1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피검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18 세	학 력	고퇴
검 사 일 시	2018년 8 월 10 일 (심리검사기록지와 동일)		검사소요시간	1 시간		
실시검사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BTI(심리검사기록지와 동일) 					
검 사 결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TJ(검사결과 및 해석) 그래프로 표현되는 결과는 그래프를 정확히 입력 상세히기록 예)(15,24,32,16) 현실감이 뛰어나고 일을 조직하고 추진하는 능력이 있으며..... 					
피검자에 대한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검사 평가 약술(8줄 이상으로 요약) 예) 어머니의 성격특성에 비추어볼 때 지나치게 일중심적으로..... 					

상담기관장 필히 기관장 (직인 날인)인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MBTI>

심리검사 실시기록 사례번호와 동일					
사 례 번 호	2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피검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학 령		
검 사 일 시	년 월 일	검사소요시간			
실시검사종류	MBTI				
검 사 결 과	선호에 의한 당신의 유형	E	S	T	P
	선호 환산 점수	17	37	11	45
피검자에 대한 평가	관대하고 느긋한 성격이다. 선입견도 없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개별적이다. 적응력이 뛰어나고 현실적인 문제 해결에 능하다. 지바타오르 적머하 무체해 대하 새경채을 모새리는 커우 스				
상담기관장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인]				

피검자 인적사항 상세히 기록

진로탐색검사 MBTI MMTIC MMPI
MMPI-2 문장완성검사 K-WAIS 로샤 등
검사 이름 정확히 기록

환산 점수 상세히 기록

심리검사 데이터에 대한 간략한 설명 기술

피검자 평가 상세 기록
- 8줄 이상으로 요약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확인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MMPI>

심리검사 실시기록 **사례번호와 동일**

사 례 번 호	10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피검사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검 사 일 시	년 월 일	검사소요시간	

실시검사종류

MMPI

검 사 결 과

L	F	K	Hs	D	Hy	Pd	Mf	Pa	Pt	Sc	Ma	Si
59	61	55	57	96	74	62	51	54	58	50	33	63

피검사에 대한 평가

현재 내담자는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시에 문제에 대하여 자신감을 잃어가고 예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임상척도는 32점 이상으로 현재까지 우울한 동시에 활동수준이 떨어져있고 무기력감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확인

상담기관장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인

피검사 인적사항 상세히 기록

진료담색검사 MBTI MMTIC MMPI MMPI-2
문장완성검사 K-WAIS 로샤 등
검사 이름 정확히 기록

피검사 평가 상세 기록
- 8줄 이상으로 요약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문장완성검사>

심리검사 실시기록 사례번호와 동일			
사 례 번 호	12	실시기관 및 장소	학생생활상담소
피검자 인적사항	성 별	남 · 여	연 령
검 사 일 시	년 월 일	검사소요시간	학 력
실시검사종류	문장완성검사		
검 사 결 과	문항	13. 나의 어머니는 대단하다. 26. 어머니와 나는 그럭저럭 잘 지낸다. 39. 대개 어머니를이런 대단하다. 49. 나는 어머니를 좋아했지만 버릇이 없다.	
	어머니에 대한 태도	2. 내 생각에 가장 아버지는 19. 대개 아버지들이란 29. 내가 바라기에 아버지는 50. 아버지와 나는	
	아버지에 대한 태도	12. 다른 가정과 비교해서 24. 우리 가족이 나에게 대해서 35. 내가 아는 대부분의 집안은 48. 내가 어렸을 때 우리 가족은 화목했다.	
	가족에 대한 태도	8. 남자에 대해 무엇보다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20. 내 생각에 남자들이란	
	남성에 대한 태도	10. 남녀가 같이 있는 것을 볼 때 23. 결혼 생활에 대한 37. 내가 성교를 했다면 47. 나의 성생활은	
	이성관계 및 결혼 생활에 대한 태도	14. 무슨 일을 해서라도 잊고 싶은 것은 17. 어렸을 때 잘못했다고 느끼는 것은 27. 내가 차지한 가장 큰 잘못은 46. 무엇보다도 좋지 않게 여기는 것은 (무응답)	
	죄책감에 대한 태도	7. 내가 어렸을 때는 33. 내가 다시 젊어진다면 45. 생생한 어린 시절의 기억은	
	과거에 대한 태도	4. 나의 장래는 11. 내가 늘 원하는 16. 내가 정말 행복할 수 있으려면 18. 내가 보는 나의 앞날은 28. 언젠가 나는	
	미래에 대한 태도	30. 나의 이상은 41. 나의 평생 가장 하고 싶은 일은 42. 내가 늙으면	
	목표에 대한 태도	단답형의 답변으로 보아 빈어적이 내담자의 모습을 추측해 볼 수 있겠 다.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 이기까지 하는 내담자의 등의 답변으로 하며 도시에 으	
피검자에 대한 평가	피검사 평가 상세 기록 - 8줄 이상으로 요약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확인			
상담기관장		학생생활상담소장 인	

<예 시 - 심리검사 상세기록 - 진로탐색검사>

4-2. 심리검사 상세기록

심리검사 실시기록 사례번호와 동일

사 례 번 호	1		실시기관 및 장소	한국청소년상담원		
피검자 인적사항	성 명	남 · 여	연 령	학 령		
검 사 일 시	년 월 일		검시소요시간			
실시검사종류	진로탐색검사					
검 사 결 과	발도	일관도	검사전 유형	검사후 유형	진로코드 1차	진로코드 2차
	보통	상	SCABE	SAABC	SS	SA
	유형	실재형 (R)	탐구형 (I)	예술형 (A)	사회형 (S)	기업형 (E)
점수	25.6	14.0	27.9	60.5	14.0	11.6
피검자에 대한 평가	해당지의 진로탐색검사 결과 변별도는 보통으로 검사결과에 대한 해당지의 생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사 전후					

진로탐색검사 MBTI MMTIC MMPI MMPI-2 문장완성검사 K-WAIS 호사 등 검사 이름 정확히 기록

빈 칸이 없도록 기록

기관장의 직인을 반드시 확인

피검자 평가 상세 기록 - 8줄 이상으로 요약

상담기관장 한국청소년상담원장 인